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35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0. 7.
- 라. 회부일자 : 2022. 10. 7.

2. 제안이유

표창 대상을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표창사실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표창의 재교부 요청 시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나.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 신설)

4. 관계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 포함)”로 한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의 범위를 거주나 소재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표창대상에 해당구의 거주 및 소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구, 강동구가 있으며, 강동구는 예외조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를 두고 있습니다.
- 단, 표창의 수여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표창제도 운영이 선행되어야 표창의 실질적인 공신력 확보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